기업 실무자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체크포인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개월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해석에 엄격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대면할 때가 되면, 막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놓치기 십상이다. 이하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기업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항목별로 구분해 상세히 살펴 본다.

오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대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와 노동 관련 자문 및 소송이다. 법무법인 율촌, 교원그룹 법무팀, SK하이닉스 법무팀을 거쳤으며 해고·징계·불법파견·통상임금 등 HR 제 분야에 관한 자문 경력을 통해 기업 인사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2개월이 흘렀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해석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기업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 본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2개월 여의 시간이 흘렀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해석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기업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 본다.

1. 상대방이 공공기관 소속인지 확인하라.

2016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은 4만919개에 이른다.

국회, 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그 대상인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목록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1]에 게시돼 있으므로 우선 위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되, 게시 시점 이후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 상대방이 공직자등인지 확인하라.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되는데,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나, 해당 기관과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중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그 공무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공무수행사인 목록은 따로 게시돼 있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그 법률상 배우자에게 취업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는 금품등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업이 해당 채용인원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채를 통해 정상적으로 채용했다면 이는 금지되는 취업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4.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하라.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사유로는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3호(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제6호(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제8호(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가 있다. 위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데, 동일인 여부는 자금의 원천(source)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업은 직무와 무관한 때에도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총액이 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금품등 (제2호)

제2호 사유의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가액범위 내라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공직자등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액기준 이하인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제3호 사유에 해당하려면 금품등을 제공할 근거(권원)가 존재해야 하고, 그 권원이 정당해야 한다. 권원이 정당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기업도 상대방으로부터 금품등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통상적, 일률적 제공 금품등(제6호)

제6호 사유와 관련, 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 사이의 연관성, 참석 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 여부,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②통상적인 범위 내인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③일률적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제6호에 교통, 숙박, 음식물만 열거돼 있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선물 제공은 제6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제7호)

제7호 사유상의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

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예컨대 기업 본사에 방문한 방문객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업 로고가 새겨진, 적당한 가격의 기념품은 제7호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마.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8호)

제8호 사유와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제품설명회에서의 1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기준이므로 제8호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상규'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조사에 손님으로 찾아온 공직자등에게 사회상규상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례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방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동일인 여부는 자금의 원천(source)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업은 직무와 무관한 때에도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총액이 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부정청탁금지법 제24조 단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해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즉 ①평상시 기업이 직원들에 의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모니터링 등 조치를 취했는지, ②법 위반 발생 시 사후 시정조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시정조치의 내용, 그에 나타난 기업의 태도 등이 판단요소가 되므로,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위반사실 사내 공지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유효하게 작동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둬야 한다. 노법